

HSBC 은행 구매론시스템 변경 및 구매론약정서 변경 관련 사전 공지

안녕하세요,

HSBC 은행 서울지점 수출입부입니다.

2018 년 10 월 16 일부터 구매론 상품을 위하여 제공되던 기존의 B2B Xpress 시스템이 종료되고, HSBC 은행의 새로운 시스템인 HSCF(HSBC Supply Chain Finance, HSBC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시스템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론약정서 (판매기업용) 및 구매론약정서(구매기업용) 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약관 신구조문표> 구매론약정서 (판매기업용)

변경 전	변경 후
<p>은행과 구매업자 사이의 구매론 약정서 양식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p> <p>제 2 조 거래조건</p> <p>4. 본인은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HSBCnet 시스템을 말함)을 통하여 제 3 항의 이자율 및 수수료 적용기준을 확인한다.</p> <p>6.본인은 이 약정과 관련한 본인의 거래한도를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정한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이러한 거래한도는 구매기업과 은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p> <p>제 7 조 계약의 해지 등</p> <p>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하여 거래한도를 축소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에 의해 거래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p>	<p>은행과 구매업자 사이의 구매론 약정서 양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p> <p>제 2 조 거래조건</p> <p>4.본인은 은행에 신청한 이메일 주소로 제 3 항의 이자율 및 수수료 적용기준이 명시된 통지서를 수령한다.</p> <p><삭제></p> <p>제 7 조 계약의 해지 등</p> <p>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약관 신구조문표> 구매론약정서 (구매기업용)

변경 전	변경 후
<p>서문</p> <p>구매론 약정서 사본,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p> <p>은행이 제공하는 B2B 전자결제서비스의 구매론을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거래기업(이하'판매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p>	<p>서문</p> <p>구매론 약정서 사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p> <p>은행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을 통한 구매론을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거래기업(이하'판매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p>

변경 전	변경 후
<p>제 1 조 목적</p> <p>이 약정은 고객이 은행의 B2B Xpress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매론을 이용하여</p> <p>제 2 조 용어의 정의</p> <p>4. 거래대금한도 : 구매기업이 은행 B2B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서(invoice) 상의 거래대금의 총액에 대한 한도.</p> <p>5. 할인신청한도 : 구매기업이 전호에서와 같이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서(invoice) 상의 거래대금 중, 판매기업들이 시스템에서 할인을 신청하는 거래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p> <p>6. 거래한도 : 은행이 판매기업별로 구매론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서, 할인 후 지급한/지급할 금액 합계를 의미한다. 거래한도는 판매기업별로 설정한다.</p> <p>7.거래승인: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인터넷, 전용선,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이에 대한 구매론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p> <p>11.승인수수료: B2B 전자결제서비스의 구매론을 이용하는 대가로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p> <p>제 3 조 거래대금한도,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p> <p>① 구매론의 거래대금한도,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은 <별표> 구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고객은 B2B 전자결제서비스의 구매론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회수할 판매기업과 동 판매기업에 대한 거래한도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은행과 고객은 판매기업에 대한 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 5 조 거래승인</p> <p>③ 은행은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금액이 제 3조에서 정한 거래대금 한도, 할인신청한도 및 제 2 조 6 호에서 정한 거래한도범위 내에서 요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제 3 조의 거래대금한도, 할인신청한도와 거래조건 및 제 2 조 6 항의 거래한도 등에 따라 정상거래로 승인처리한다. 고객은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기로 한다.</p>	<p>제 1 조 목적</p> <p>이 약정은 고객이 합의한 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매론을 이용하여</p> <p>제 2 조 용어의 정의</p> <p><삭제></p> <p>4.할인신청한도 : 구매기업이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서(invoice) 상의 거래대금 중, 판매기업들이 시스템에서 할인을 신청하는 거래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p> <p><삭제></p> <p>5.거래승인: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인터넷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이에 대한 구매론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p> <p>9.승인수수료: 시스템을 통해 구매론을 이용하는 대가로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p> <p>제 3 조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p> <p>① 구매론의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은 <별표> 구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삭제></p> <p>제 5 조 거래승인</p> <p>③ 은행은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금액이 제 3조에서 정한 할인신청한도 내에서 요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제 3 조의 할인신청한도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정상거래로 승인처리한다. 고객은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기로 한다.</p>

변경 전	변경 후
<p>제 6 조 거래승인의 제한</p> <p>3.거래대금한도, 할인신청한도 또는 거래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p> <p>제 7 조 할인된 금액의 입금</p> <p>② 제 1 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할 경우, 은행은 할인 신청서상의 예정 할인일에 할인된 금액을 판매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거래 할인조건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통지한다. 다만, 은행이 예정할인일보다 늦게 할인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판매기업에게 동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후 판매기업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할인신청건을 처리하기로 한다.</p> <p>제 8 조 구매론 상환</p> <p>③ 고객이 만기일에 구매론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만기일 전이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 이 경우 거래대금한도,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한도는 은행의 판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승인된 거래 중에 할인되지 않은 거래는 은행에 의해 승인취소될 수 있다.</p> <p>* 연체이자 = 연체금액×(만기일의 CD 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 일로 적용한다.)</p> <p>④ 판매기업이 할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승인분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에게 먼저 구매대금을 입금하고 당일중에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출금함으로써 구매대금을 상환받기로 한다. 단, 고객의 결제계좌의 자금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구매론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결제분에 대해 제 3 항에서 언급된 산식에 따른 연체이자 미결제일 당일부터 적용되며 은행은 연체이자를 포함한 해당 미결제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고객에게 행사할 수 있다.</p> <p>제 13 조 약관적용의 순서</p> <p>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다만 여신에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만약, 이 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p>	<p>제 6 조 거래승인의 제한</p> <p>3.할인신청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p> <p>제 7 조 할인된 금액의 입금</p> <p>② 제 1 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할 경우, 은행은 할인 신청서상의 예정 할인일에 할인된 금액을 판매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거래 할인조건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통지한다. 다만, 은행이 예정할인일보다 늦게 할인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판매기업에게 동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후 판매기업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할인신청건을 처리하기로 한다.</p> <p>제 8 조 구매론 상환</p> <p>③ 고객이 만기일에 구매론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만기일 전이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 이 경우 할인신청한도는 은행의 판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승인된 거래 중에 할인되지 않은 거래는 은행에 의해 승인취소될 수 있다.</p> <p>* 연체이자 = 연체금액×(만기일의 CD 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 일로 적용한다.)</p> <p>④ 판매기업이 할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승인분의 만기일 고객과 합의된 시간에 일괄적으로 구매기업의 지정된 계좌로부터 구매대금을 인출하여 해당 영업일 중 판매기업에게 송금하기로 한다. 지급정지명령 및 계좌잔액부족 등으로 구매대금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의 자금 미수취에 따른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한다.</p> <p>제 13 조 약관적용의 순서</p> <p>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다만 여신에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만약, 이 약정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p>

2018년 10월 16일부터의 거래는 새로운 HSCF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가 진행되며 구매론약정서(판매기업용)가 적용됩니다. 또한 구매론 약정서(판매기업용)과 같이 적용되는 구매론약정서(구매기업용)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화번호, 결제계좌, 담당자 정보(이메일주소), 할인방식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2018년 10월 15일까지 첨부된 구매론신청서 양식과 고객확인서를 사용하시어 추가제출서류(구매론신청서 양식하단 기재)와 함께 당행으로 변경신고 부탁드립니다. HSCF 시스템의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만 거래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심동엽 (유선 2004-0030) 이메일: dongyubshim@kr.hsbc.com
김현정 (유선 2004-0186)
이숙영 (유선 2004-0307)

우편발송 주소 : 서울 중구 칠패로 37
홍콩상하이은행 3층 수출입부
구매론 담당자 앞 (전화번호 2004-0030)
100-161

감사합니다.

홍콩상하이 은행 서울지점 수출입부